

학·석사 연계과정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·석사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행범위) 학·석사 연계과정은 학과 및 전공의 요청을 받아 시행한다.

제3조(지원 및 자격) 학·석사 연계과정에 지원하려는 자는 지원서를 대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학사학위과정 정규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대학 학칙 제48조(수료학점)의 수료인정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(다만, 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은 정규 6학기 이상 이수한 자)
2. 총 평균평점이 B° (3.0) 이상인 자 <개정 2024.7.1.>

제4조(전형방법)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서, 대학성적, 연구활동 계획서 등과 학과(전공)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
제5조(모집단위 및 인원)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에 한하며, 모집인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대학 수강신청 및 이수학점) 학·석사 연계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은 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 이내에는 학기당 최대 24학점(대학원 교과목 포함)까지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대학원 교과목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학기 당 최대 9학점까지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.

제7조(등록 및 졸업) ①학·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대학원 교과목 6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총 138학점(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은 168학점) 이상 취득하고 그 평균평점이 “B°”(3.0) 이상이어야 대학 졸업이 인정된다. 다만,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총 146학점(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은 176학점)이상 취득해야 대학 졸업이 인정된다. <개정 2024.7.1.>

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·석사 연계과정 중도 포기자로 간주하여 대학 수업연한 단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학사학위과정 정규 8학기(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은 정규 10학기) 등록을 해야 한다.

1. 학·석사 연계과정 중도 포기 신청자
2. 학사학위과정 정규 7학기까지 138학점 이상(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은 정규 9학기까지 168학점 이상) 취득하지 못한 자 (다만,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총 146학점(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은 176학점) 이상 취득하지 못한 자)
3. 대학원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지 못한 자
4. 총 평균평점 “B°”(3.0) 미만인 자 <개정 2024.7.1.>
5.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지 아니한 자

③대학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학·석사연계과정 대학졸업신청서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에, 대학원 입학지원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학기 별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 후 3차 학기 이내에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수업

료 전액을 납부하고 4차 학기 등록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칙)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②이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7.1.)

이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